

區政質問答辯資料

【 제50회 정기회 】

- 尹明奎議員 -

麻 浦 區

구정질문 답변자료

- 청소과 -

질문의원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건축폐기물 단속초소 단속요원 직무유기사건 현황과 사후대책 및 상급자 책임한계는 ?

답변내용

- 단속초소 단속요원 직무유기 사건이 발생한 성산동 526-3호 일대는 건설폐기물 불법 수집·운반업자인 이재석을 '97년 2월에 적발하여 마포 경찰서에 고발하자 수집된 건설폐기물을 방치한채 도주한 지역입니다.
- 마포구에서는 토지소유자를 찾아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제거토록 통지하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김명수가 '97년5월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면서 '97년10월8일 06시경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수집하다 잠복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관에 적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인근 제2초소근무자 중 1년이상 근무자 5명도 '97년10월23일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사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있어 구속되었으며 '97년11월15일 금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 이지역은 미개발 사유지가 많은곳으로 넓은 면적에 출입도로가 사방으로 나있는 관계로 그간 수차례 걸쳐 현장 감독 및 근무교육을 통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단속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사건을 전후하여 초소근무자를 종전 기능직 공무원에서 단속경험이 풍부한 방법원으로 교체하였으며, 초소근무자에게 근무지침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감시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함은 물론,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가 많은 토지(공지) 소유자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단속을 촉구하여 이지역의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청질문 답변자료

- 세무1과-

질문의원	윤 명 규 의원
질문요지	차량등록세 비리사건에 관한 구청입장 및 대외적 표명의사는?
<p><u>답변내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이전에 먼저 차량등록세 부과 징수업무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차량등록세 유용혐의 사건은 현재 서부지청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의 전말은 알 수 없으나 자체 확인결과 공무원이 개입한 혐의는 없습니다. ○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11. 6자로 상업은행으로부터 미입금액 3억2천8백만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 97. 11. 17자로 지연입금에 따른 지체손해배상금 4천4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차량등록세 유용혐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사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3천건의 차량등록세를 접수처리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과 같이 납부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세금으로 아무때나 납부하고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받은 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부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 서울시내 25개 구청 어느 곳에서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별로 출력되는 수납부에 미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납세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으나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처분사항이 통보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본사안에 대한 대외적인 입장표명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오나 본건은 우리가 수사의뢰하여 현재까지도 서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표명하는 것 보다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 보다더 자세한 사항을 밝히는 것이 시의 적절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 앞으로는 각종 수입금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세무전산화 계획과 연계 99. 5월까지 지역세무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세입금의 수납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수납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며,
-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는 99.5월 이전까지는 월별 수납내역 확인 작업을 최대한 신속·정확히 처리토록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직원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여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답변자료

(건설관리과)

질 문 의 원	윤 명규 의원
질 문 요 지	○ 가로정비 단속건수와 과태료 징수금액 내역과 단속과정에서 단속물 몰수 물건 처리현황

답 변 내 용

1.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도로를 불법점유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상적치물(손수레, 포장마차, 입간판 및 적치물)에 대하여 가로정비단속반을 투입하여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불응하거나 재발시에는 강제수거를 하여 수거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물품은 본인이 반환을 원할시는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자진납부토록하고 물품은 반환하고 있습니다.

'97. 11. 30현재 총수거 물품은 311건으로 그 중 82건은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2,962천원을 납부하고 찾아갔으며 찾아가지않은 물품 229건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중인 수거물품은 사용못하는 폐품이 대부분이며, 사용 가능한 물품은 제외하고는 연말안으로 폐기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질문 답변자료

사회복지과

질문의원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사회복지예산 투자가 미약한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그간의 경제성장과 주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 복지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출발로 주민들은 각자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보호자, 장애인, 노인등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복지욕구는 날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지 마포 건설' 을 목표로 주민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 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복지예산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의 약 4%정도지만 우리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178억여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14%이며, 여기에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합쳤을 경우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구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볼때 빈약하다고 할 수 없으나 전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질문 답변자료

위 생 과

질문의원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위생업소 및 일반,휴게,단란,유흥업소에 대한 경찰단속건수와 영업자의 청문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내용	<p>○. '97년 1월부터 '97.11월말 현재까지 경찰 단속건수는 총 906건 이며</p> <p>○. 경찰서에서의 위반업소 적발통보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전에 우리구에서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영업주는 구청 청문과정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찰서에서 우리구에 적발통보시에는 적발당시 영업주가 단속 경찰관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명확한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청문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경찰서의 적발통보 사항을 수용 할수밖에 없습니다만</p> <p>○. 청문과정에서 영업주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적발당시 확인공무원의 의견조회등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한후 행정처분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생업임을 감안하여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등의 처분보다는 과징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p>

구정질문 답변자료

재무과

질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구청소관 공사중 수의계약 방법이 각과에서 동일치 않은 이유는?

답변내용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등에서 여러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발주는 거의 하지않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발주 주관부서에서 설계 및 업체를 결정하여 오면 재무과에서는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일반적인 공사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 있으나, 간단한 시설물의 보수 및 수리등에 대하여는 약식도면이나 설계서 또는 견적서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질문 답변자료

총무과

질문의원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공무원의 진급시기가 지났는데도 자동진급 되지않는 이유는?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규정 1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대상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은 7년이상, 8급은 8년이상 재직하여야 하고 기능직공무원은 10등급은 7년이상, 9등급은 8년이상, 8등급은 9년이상 재직하여야 하되,
- 재직기간중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은 제외되며
- 대상인원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1항의 「별표4」에 규정된 배수안의 서열명부에 등재된자를 근속승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또는 징계사항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할경우는 근속승진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1항 별표4)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 5	결원 1인당 4배수
6 ~ 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때 1인당 3배수+20인
11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때 1인당 2배수+35인

구청질문 답변자료

가정복지과

질문의원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어린이집 급식은 예산취지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답변내용

- 우리구 보육아동은 보육시설 110개소에서 4,384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이중 정부지원시설 35개소에서 보육하고 있는 2세까지의 영아 839명에 대하여 1인 1일 800원씩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어린이집 급식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예산운용취지대로 잘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장은 효율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월간 급식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 아동 1인당 1일 총집행액은 1,745원으로서(급식비 835원 간식비 910원) 급식은 1일 1회 실시, 간식은 오전,오후로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97.11.30 현재 간식비 총지원액 157,837,660원

※ 급식비는 자체 부담임

구정질문 답변자료

- 총무과 -

질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
질문요지	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이 구민과 직결될 경우 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질책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답변내용

윤명규의원님께서 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이 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질책을 받는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이나고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우리 마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질책을 받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 많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많은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저희 공무원들을 욕하기도 하고, 또는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의원님들도 주민들과의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중간에서 난처한 경우를 당하실 때가 있으시리라 봅니다.

임사회 또는 정기회 회의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전달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왜곡되어 질책을 받으셨다면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이 왜곡되어 잘못 알려지지않고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질문 답변자료

총무과

질문의원 윤 명 규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질문요지 각국장 및 과장간의 긴급연락망이 미비한데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

□ 윤명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수칙 제37조에 의거 근무 시간은 물론이고, 근무시간이 아닌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며, 동규칙 37조2항에 의거 부서별 필수요원을 지정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에따라 우리구 직원은 근무시간중 출장시에는 출장부에 기재 하여 항상 행선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일과시간 이후에 소재파악을 위하여 당직실에 전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자동동보 장치에 입력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잠시 부서를 떠나 있거나 차량으로 이동중, 또는 귀가도중에 다른곳에 용무가 있는 경우등에는 연락이 안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 구에서는 동장24대 ,토목과,하수과등 재해관련 및 민원발생 예상부서 7대,국장급 이상간부 7대 등 38대의 무선호출기와 민방위재난관리과,건설관리과,구간부 일부에게 16대의 휴대폰을 지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 위에 설명드린 통신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동간부의 연락 체계를 확보하겠으며,수시로 비상연락체계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공백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질문 답변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질문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윤명규의원
질문요지	<p>마포구내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확정으로 인한 주변환경 미화 대책은 있는지? 또한 시에 건의하여 특별대책을 받은일은 무엇인가?</p>
답변내용	<p>윤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p> <p>'97년 10월 10일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부지가 상암지구로 확정된 이후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29일과 11월 21일 2차에 걸쳐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 주변도로,교통,공원등과 같은 도시계획 사업과 이전 및 정비시설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서울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p> <p>윤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직 주경기장의 정확한 부지경계가 결정되지 않고 있으나 건립부지가 결정되는대로 국제경기를 개최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우리구에서도 이에따른 문제점을 검토후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구청질문 답변자료

(토 목 과)

질문의원	윤명규의원
질문요지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울시로부터 성산동에 미포장도로가 그대로 있는데 특별 지원대책은?

답변내용

- 의원님이 질의하신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미 포장도로 위치는 마포구 중동 80~81-31간과 중동 58-43~58-29간의 지역이며, 폭 4m, 연장 각각 45m 정도가 현재까지 미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 미 포장구간은 사유지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포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자료

(건설관리과)

질문의원	윤명규 의원
질문 요지	○ 난립된 가로변 설치 현수막을 허가제로 함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제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구청에 신고후 현수막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어 현수막의 무단설치와 단속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난립된 현수막을 일정장소를 선정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97. 11. 28 일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3개소(마포구청건너편, 신석초등학교담장, 아현초등학교담장)설치 완료 하였고 금년내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현수막 난립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부서 : 건설관리과에 신고(현수막 지참)
- 계침기간 : 신고일로 부터 15일간
- 신고수수료 : 5,000원(개당)
- 도로점용료 : 22,500원(개당)
- 빈공간이 있을시 연장 가능

구정질문 답변자료

- 의약과 -

질문의원	윤 명 규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질문요지	보건소 인원 충원에 비해 모든 장비가 재래식으로 있는데 이를 현대장비로 대체 및 구입해야 하지 않는가?
<p>답변내용</p> <p>보건소에서는 늘어나는 진료 및 검사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내구년수가 경과하고 고장나거나 불량인 장비를 위주로 예산한도 내에서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최신(현대)장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내역을 년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p> <p>1. 장비 교체내역(년도별) : 총215,825,600원(1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년도 교체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세척기 : 3,389,850원 ○ '93년도 교체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류수제조기 : 4,604,270원 - 현미경 : 1,985,820원 - 혈액분석장치 : 22,193,750원 - 뇨자동분석기 : 2,974,230원 - 배지자동분주기 : 5,535,730원 ○ '94년도 교체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선진단기 : 31,332,600원 - 인큐베이터 : 9,974,800원 - x선 필름복사기 : 1,320,000원 	

○ '95년도 교체장비

-엘리샤프로세서 : 43,754,550원

-고압멸균기 : 7,560,000원

○ '97년도 교체장비

-자동현상기 : 22,000,000원

-자동생화학분석기 : 57,000,000원

-치과컴프레샤 : 2,200,000원

위와같은 교체사업을 앞으로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보건소의 대민의료서비스 강화는 물론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향후 계획 : 약42,200,000원(6건)

○ '98년도 교체예정 장비(예산반영)

-자동약포장기 : 9,100,000원

-자동시력측정기 : 4,300,000원

-소생기 : 1,700,000원

-자동혈압계 : 3,600,000원

-수질검사기 : 8,500,000원

○ '98년이후 교체예정 장비

-치과유니트체어 : 15,000,000원

구청질문 답변자료

공원녹지과

질문의원 윤 명 규 의원

질문요지 관내 가로수를 낙엽수 대신 유실수로 교체함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자료

- 마포구 가로수 현황은 버즘나무 5,234주, 은행나무 4,015주 기타수종 603주 총9,852주로 낙엽수인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94%로 노선별 특색없이 단순한 것은 가로수 고유의 기능인 녹음제공, 매연 및 분진흡수, 공기정화 능력과 서울지방환경에 적응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한 결과인바, 제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기존 가로수를 가로변 환경에 적응력이 약하고 관리가 어려운 유실수로 교체 식재는 제반 여건상(막대한 예산소요등) 어렵다고 생각하며 향후 신설 도로에는 노선별로 특색있게 느티나무, 회화나무, 메타세콰이어, 감나무, 매실나무 등의 수종을 식재하겠습니다.

구청질문답변자료

-청소과-

질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18. 쓰레기 마포구 중간집하장의 시설이 미비한데 대책은 있는지, 청소차량의 수도권매립장 폐기물계량카드의 출입카드 반입정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p>답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중간집하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중간집하장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1992년 10월에 난지도 제3진입로 입구에 부지면적 1,600평의 규모로 건설하였습니다. ○ 중간집하장에서는 직영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압축적재함에 압축적재하고, 연탄재는 단순 적재하여 11톤 수송차량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 주요 시설 및 장비로는 쓰레기압축기 5대와 연탄재 적재대 2개소가 있으며, 그후 1995년 12월에 일반폐기물소각로 1대, 96년 3월에는 스티로폴 감응기 1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 압축적재함 46대와 일반적재함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간집하장은 설계 당시부터 한시적인 시설로 설계되어 우천시의 작업자에 대한 대책과 먼지 저감 시설이 없지만, 우리구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이곳으로 확정됨에 따라 타 장소로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현 위치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려우며,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는 2001년 이후에는 모든 시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의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현황은 148회에 정지일수는 연 1,202일입니다.
-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112건, 기타 가내공업폐기물의 혼합반입과 재활용품 혼합반입등으로 인한 정지회수가 36회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반입정지가 76%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처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반입정지 횟수가 많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전체 쓰레기의 40%에 달하는 우리구의 쓰레기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져 음식물의 수분이 적게 발생하여 반입정지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구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는 반입정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홍보활동과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 혼합반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는 현재 음식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생활쓰레기 배출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축산 유기농가와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중개알선을 적극 시행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등 단기적인 대책을 추진 하겠으며,
- 장기적으로는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의 발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술력 축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수거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대책의 시행에 따라 우리구 수송차량의 반입정지는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오며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는 2001년 이후에는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질문의원	윤명규의원
질문요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인한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무효화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의 계획은?

[먼저 농수산물시장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97년5월17일 마포개발공사 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97년9월4일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97년9월11일부터 97년10월15일까지 공사 사장 및 이사 그리고 일부 필수직원(4명)에 대한 공개채용을 실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마치고 사장선임 업무추진중 97년10월10일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지구로 결정되어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시장을 포함하여 3개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안전성여부, 교통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만간 최종적인 건립위치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사업추이를 보아가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의 현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정중에 있는 월드컵 주경기장 위치 결정과정을 참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장을 선임하고 자본금 납입과 마포개발공사 설립등기를 하여, 사장(전문경영인)이 사업 계획을 수립, 직원채용과 시장개설등록 (구청 산업과) 및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예산편성, 사무실 집기구매, 매장설비, 소모품구매, 주차관제시설설치, 매장전산시스템구축, 사규제정등 시장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수산물시장이 조기에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자료

— 주택과 —

질문의원	윤 명규 의원
질문요지	-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건축자재 생산업체 이주대책과 그에 대한 보상대책은 시로부터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윤명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건축자재 생산업체 이주 대책과 보상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예정 위치 주변에 있는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수는 12개소이며 이업소에 대한 대표자·토지소유자 확인 하는등 정비대책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한바 있으나
- 구체적인 이주대책과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주경기장 위치가 결정 고시된후 건축자재 생산업체 정비는 경기장 건설 추진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구청질문 답변자료

- 총무과 -

질문의원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시급히 성산2동사무소 신축 및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자료

- '97.10.31 현재, 성산2동 인구는 13,688세대/41,850명인 과대동으로서 현 동청사는 대지 121.4평, 건물연면적 166.5평으로서 3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열악한 사무실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미 주지하다시피 '97년도에 성산2동을 분동하고자 분동 청사 신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요시책 사업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인구과소동 및 통·반조직 통·폐합으로 대동체제 구축」 등 사유로 전자주민카드 전면 시행시까지 분동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 '96. 1. 8 성산시영연립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사전결정 당시, 현 동청사부지 121.4평은 재건축사업 부지로 포함되는 대신 현 동청사인접지인 성산동 145-6외 3필지 271.7평을 동청사 및 파출소 부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 제4항에 의할 때 행정청의 동조합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시에는 사전결정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재건축사업과 상호 연계하여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진입로를 막고있는 동청사를 조합에 귀속시키고 우리구는 보다넓은 동청사 부지를 확보한다면 주민들도 좋고 우리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만약, 동 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이 승인되고나면, 재건축사업과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동청사 신축공사부터 먼저 진행하여 완공한 후, 현 동청사로부터 이전한 후, 현 동청사를 조합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 동청사 신축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대지면적이 271.7평이 되므로 건폐율을 60%로 보더라도 바닥면적이 163평에 달하므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동사무소 기능뿐만 아니라 독서실, 취미교실, 체육센터 등 주민복지 시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건물로 신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그런데, 동 조합의 사업추진이 진입로 문제, 조합참여 미동의세대 등 문제로 '98년도에 착공이 어려워지고 사업의 장기화로 조기에 동청사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후보지를 매수하거나,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자료

가정복지과

질문의원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시급히 성산2동 사무소 신축 및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p>답변내용</p> <p>○ 현재 성산2동에 있는 주민 복지시설 현황은 이대성산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구립이 3개소 민간시설이 13개소이며, 경로당은 구립이 3개소 사립이 4개소이고, 기타 자활 지원센터 공동작업장 도서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p> <p>○ 향후 난지도에 설치예정인 자원 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종합복지관을 설립키로 계획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원회수시설 사업 확정후 결정될 것입니다.</p> <p>○ 그리고 노인정, 어린이집은 타동과의 균형 및 사정으로 건립계획은 아직은 없으며 구정방향이 기존 복지시설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p>	

구정질문답변자료

-청소과-

질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 의원
질문요지	22. 용산 청소차를 관내 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떠한가?

답변내용

- 용산구 청소차고는 상암동 1538외 2필지의 난지도매립지에 속하는 시유지로서 관리부서인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94년 6월 20일 부지사용 허가를 하여 1,50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96년 12월 31일로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부지 반환절차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월드컵경기장 유치, 난지도 안정화 사업, 자원회수시설 건설등으로 용산구 청소차고뿐만 아니라 난지도 인근에 있는 타 기관의 사용부지도 이전 또는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적하신 용산구 청소차고도 98년 상반기 중에는 반환이 완료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피해보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